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13. 정을호의원 등 21인

나. 회부일자 : 2025. 3.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0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5.12.09.)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을호 의원)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2%인 51곳이 카드납부가 가능했고 31%인 78곳은 현금 분할납부 가능했으며, 59.9%인 151곳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음. 이처럼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천우정)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등록금에 대하여 카드에 의한 결제방식 및 분할 납부 등 납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법령은 기숙사비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경우 조사대상 252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51개(20.2%),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8개(31.0%), 현금으로만 일시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1개(59.9%)로 나타났고,

전문대학의 경우 조사대상 121개 기숙사 중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7%),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15.7%), 현금으로만 일시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94개(77.7%)로 나타났는바,

대학 기숙사의 경우 현금으로만 일시납부해야 하는 기숙사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숙사비를 현금 외에 카드 방식(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으로 납부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납부의 편의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도 이와 같은 취지로 보임.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의 월평균 기숙사비는 대학의 설립구분, 기숙사 1개실 당 수용인원, 직영·민자 등 운영형태 등에 따라 15만원에서 53만원 내외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통상 한 학기 기숙사 거주기간이 4개월임을 감안할 때 다수의 기숙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금 일시납 결제방식의 경우 한 번에 결제해야 하는 기숙사비는 최고 20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는 실정인바,

카드 납부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기숙사비 납부의 경제

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평균 1.5%에 달하는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으로 인하여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할납부가 가능해질 경우 수납·환불 및 퇴사 처리 등을 위하여 행정력 및 관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¹⁾.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등록금과 기숙사비)임에도 현행법 제11조의 규정과 조문 체계면에서 상이하므로, 해당 규정을 감안하여 수정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1) 여러 대학들도 카드 수수료 발생으로 인한 기숙사비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분할납부를 실시할 경우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잔여 기숙사비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분할납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출하였음.

대안 반영 폐기